

남양주시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317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9. 3. 9.

제출자 : 자치행정위원장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9. 2. 27. (남양주시장)

나. 회부일자 : 2009. 3. 2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65회 남양주시의회(임시회)

제1차 자치행정위원회(2009. 3. 9.)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 : 총무기획국장)

가. 개정이유

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시와 범죄예방 단체의 책무 및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지역사회안전을 위한 시의 책무와 시민단체의 책무를 정함(안 제3조 제4조).
- 아동·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및 범죄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지역사회안전심

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(안 제5조부터 제12조).

- 아동·청소년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요건과 그 활동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3조·제14조).
-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사망한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사회안전망 확보의 일환으로 장례비 등의 지원 및 지급제외 사유에 대한 사항을 정함(안 제15조·제16조).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: 생략 - 회의록 참고

4. 심사중 논의된 사항

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여성대상 강력범죄 사건을 감안하여 여성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 지원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. 끝